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9
------	-----

2012. 6. 22.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2년 6월 8일

나. 제안자 : 조상호·김인호 의원(찬성자 26명)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2년 6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년 6월 22일)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시정현안 문제의 해결대안 마련이나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와 조사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 연간 수십 억 원 규모의 학술용역을 의뢰하고 있음.

이들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학술용역심의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심의회의 기능이 사전 심사에만 국한되어 있어 학술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학술용역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심의회의 실질적인 심사와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와 연구수행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학술용역 심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학술용역 주요내용의 변경, 용역비 및 용역기간의 증가, 학술용역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 점검·평가·

결과관리,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을 추가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반적인 기능을 강화함(안 제4조).

- 심의회 회의 개최 고지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안건 심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함(안 제6조 제4항).
-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의 자체 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토록 함(안 제9조 신설).
-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재심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 학술용역의 착수보고, 중간점검, 최종결과물을 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함(안 제12조 신설).
-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활용보고서를 심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3조 신설).

- 학술용역 결과물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부실 또는 조잡하게 수행한 경우,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액의 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안 제14조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개요

- 동 전부개정안은 서울시의 시정 현안문제 해결 및 주요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술용역심의회’의 기능이 사전심사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를 학술용역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학술용역심의회의 실질적인 심사와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와 연구수행기관의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서울시는 시정현안 문제의 해결 또는 대안 마련이나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60여건에 89억원의 용역계약 실적을 보이고 있음.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연도별 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3	83억원	46	83억원	41	57억원	60	89억원

※ 2012년도 실적 : 계약완료 38건 59억원, 심의통과(시행예정) 22건 30억원

-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 총 54명의 위원(시의원 4명, 공무원 4명, 외부위원 46명) 중 학술용역 상정 안전에 따라 그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06년 9월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도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음.

〈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현황 〉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선임(임기 1년, 연임 가능)
- 위원 Pool 구성 : 총 54명(임기 2년, 연임 가능, '12. 1.13 구성)
 - 시 의 원 (4) : 서울시의회 의장 추천
 - 외부위원 (46) : 교수 32, 연구원 14(남 39, 여 15)
 - 내부위원 (4)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관

○ 분야별 심의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복지	여성	경제	알리	도시	주택	안전	교통	문화	환경	행정	재정
인 원	46	5	2	3	2	5	3	3	5	5	7	4	2

※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 15인 이내

- 시의원 2명, 내부위원 4명, 위원 Pool에서 상정안전에 따라 외부 위원 9명 내 선임

- 그러나 심의회의 기능이 사전 심사에만 국한되어 학술용역과정별 보고, 학술용역 활용에 대한 확인, 부실 학술 용역에 대한 조치 등 학술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심의회의 기능 강화와 학술용역의 중간 점검 및 종합평가 등 용역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학술용역의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사항별 검토

1) 학술용역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1항)

- 개정안에서 학술용역이란 “서울시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자문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학술용역을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 형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은 공무원 직접

수행 과제와 같이 다양한 연구형태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는 일부 보완이 필요함.

2) 학술용역심의회 구성(안 제3조제2항)

- 개정안에서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심의회 위원을 총 50명으로 구성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해 최대 5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회 위원(특히 외부위원)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됨.
- 심의회 위원의 적정 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다양한 전문분야와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3)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기능(안 제4조)

- 개정안은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용역의 취소 또는 계약 해지’와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그리고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의 기능을 신설하였음.

- 이는 학술용역의 점검과 평가, 환류 등을 통해 학술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 제고,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 부과 등 현행 학술용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다만, ‘학술용역의 취소 또는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관련법 시행령 규정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또한,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와 이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법 제31조1)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학술용역심의회 심의대상(안 제5조)

- 개정안은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학술용역 대상사무 중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은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정부 부처에서 국비, 국가기금 교부사업 내용에 학술용역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있으나, 학술용역의 구체적 내용,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음.
- 이처럼 국비,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심의를 배제시킬 경우 학술용역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5) 학술용역심의회 의안 제출(안 제9조)

- 개정안은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학술용역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상정안건별로 주심위원을 선정하고 사전검토의견을 회의 개최 7일 ~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심의회 상정 안건의 제출 기한은 심도 있는 심의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총 25일) 되므로 심의회에 의안 제출 기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6) 학술용역심의회 재심의 규정(안 제10조)

- 개정안은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항, 그리고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학술용역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심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항의 경우, 용역내용의 충실성 제고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므로, 재심의 대상에서 용역기간은 다소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심의회에서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한 동 규정은 관련 법령상 '계약심의위원회' 소관 업무와 중첩되므로 이에 대한 기능조정이 필요함.

7)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용역결과 관리(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개정안은 학술용역의 착수보고, 중간점검, 최종결과물을 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학술용역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며,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등, 학술용역 완료 후 활용보고서를 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학술용역의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용역의 심사와 관리 감독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용역관리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이므로 적절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8)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14조)

- 개정안은 학술용역 결과물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부실 또는 조잡하게 수행한 경우,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액의 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실학술용역에 대한 조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집행부는 법 제31조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권한 위임이 없는 동 개정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관련법과 상치되는 조항으로,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라. 종합 검토

- 개정안은 학술용역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동안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을 담고 있어 학술용역의 내실화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해 일부 조항의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학술용역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용역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학술용역심의회의 위원의 수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중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무원 직접수행 과제’와 같이 다양한 연구형태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함(안 제2조제1항).
- 심의회의 위원의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와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심의회 위원의 수를 최대 54명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개정안 중 ‘학술용역의 취소 또는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6호).

- 학술용역 대상사무 중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은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은 국비,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심의를 배제시킬 경우 학술용역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함(안 제5조).
-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은 심도 있는 심의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5일 전까지로 의안 제출 기한을 조정함(안 제9조).
- 부실학술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실학술용역을 수행한 해당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4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99
----------	--------

제안년월일 : 2012년 6월 22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가. 학술용역심의회는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용역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수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무원 직접수행 과제'와 같이 다양한 연구형태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심의회 위원의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와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심의회 위원의 수를 최대 54명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개정안 중 ‘학술용역의 취소 또는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6호).

라. 학술용역 대상사무 중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은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은 국비,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심의를 배제시킬 경우 학술용역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함(안 제5조).

마.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은 심도 있는 심의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5일 전까지로 의안 제출 기한을 조정함(안 제9조).

바. 부실학술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실학술용역을 수행한 해당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4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외부위원 : 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으로 구성

안 제4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대상)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학술용역 대상사무는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거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된 학술용역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15일 전까지”를 “25일 전까지”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해당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에서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자문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p> <p>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과담당관 또는 사업소를 말한다.</p> <p>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p> <p>2. 외부위원 : 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을 포함한 10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p> <p>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5.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변경 6. 학술용역의 취소 또는 계약 해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p> <p>2.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p> <p>2. 외부위원 : 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으로 구성</p> <p>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개정안과 같음) 6. <삭제>

개정안	수정안
<p>7.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p> <p>8.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p> <p>9.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심의대상)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학술용역 대상사무는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으로 한다. 다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은 제외한다.</p> <p>제9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4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3항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학술용역계약의 이행이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p>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6.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p> <p>7.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p> <p>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심의대상)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학술용역 대상사무는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거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된 학술용역으로 한다. <단서 삭제></p> <p>제9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개정안과 같음) <p>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과·담당관 또는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학술용역심의회 구성)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외부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으로 구성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5.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변경
6.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7.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학술용역 대상사무는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거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된 학술용역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학술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임시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 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 안전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내부 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외부위원 중 안전관련 전문가가 없을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외부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사항
4.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가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및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착수, 중간점검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학술용역 진행사항에 대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물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용역결과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2. 학술용역계약의 이행이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 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